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규정 주요 개정 내용

가. Ph.D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1) 제13조의 2(연구방법론) **2017년 이후 '미디어문화연구' 전공 입학자의 경우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양적 연구방법론 관련 과목을 한 과목 이상 공식 청강 혹은 수강**하여야 한다. 학부나 석사 과정에서 이미 공식 청강 혹은 수강한 전력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 제출을 통해 이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2) 제14조(학술평가) **모든 학생은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이전까지 교외에서 일정 수 이상의 논문을 발표해야 하며**, 그 평점은 본대학원의 산출방식에 의거, 제16조에 규정한 학술평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학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휴학기간을 포함, **논문 제출시까지 기준 학술평점을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학위논문 본심을 가질 수 없다.** 본대학원의 학술평가 평점표는 연세대학교 교무처의 업적점수 산출방식을 근간으로 하여 일부 수정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제16조(평점기준) 졸업에 필요한 학술평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따로 정한다.

1. 2015년 9월 입학자까지 : 150점

2. 2016년 3월 입학자부터 : 250점(국내 1등급 이상 학술지 논문 반드시 한 편 이상 포함)

구분	업적내용	평점	비고
논문	국내 1등급	150점	※ 등급 구분은 교무처 기준에 따름. 단, 전공주임교수와 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교무처 목록에 없더라도 등급 판정 가능함.
	국내 2등급	100점	
	국내 3등급	70점	
	국내 4등급	30점	
	국제 1등급	400점	
	국제 2등급	210점	
	국제 3등급	100점	
	국제 4등급	30점	
저술	전문연구서	150점	※ 교무처 기준표를 단순화하고 '교과서' 항목 제외했음 ※ 저술 종류의 최종판정은 전공주임교수와 부원장이 담당함. ※ '기타저작물'의 경우 저술 성격상 70점 이하를 부여할 수 있음
	교양학술서	100점	
	학술번역서	100점	
	기타 저작물	70점	

나. M.F.A. / D.F.A. 학위논문 및 학위프로젝트에 관한 시행세칙

1) 제7조(제목변경) 프로포절에 합격한 이후 학위논문이나 학위작품의 제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위프로젝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위프로젝트 제목변경원>을 예심일 이전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순한 제목의 변경이 아니라, 학위프로젝트의 진행 주제와 내용이 상이하게 변경될 경우, 이미 프로포절에 합격하였더라도, 학위프로젝트지도교수는 프로포절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2) 제18조(프로포절과의 연계성) 학위논문 및 학위작품 프로포절에 합격한 내용과 예비심사 발표 내용이 일치해야한다. 이 양자가 **현저하게 상이할 경우, 심사위원회는 학위논문 및 학위작품 작성자에게 프로포절부터 다시 하라고 판정할 수 있다.**

다. D.F.A.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1) 제2조(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 모든 DFA과정 학생은 4학기(등록기준)가 시작되기 전에 논문의 세부 주제와 학위 작품의 제작 기획이 명시된 '학위 프로젝트 연구계획서'를 본대학원 행정팀에 제출해야 하며, 이 때 희망하는 '학위 프로젝트 지도교수'를 명시해야 한다. **단, 당해 학기 기준 3학기 이상 학생이 현재까지 학위 프로젝트 지도교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학기 시작 전 까지 학위 프로젝트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2) 제12조(필수 학술평점) ①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한 이후부터 박사학위작품과 논문을 제출하기 이전(휴학기간 포함)까지 교외에서 일정 수 이상의 작품이나 논문·저술을 발표함으로써 필수 학술평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업적별 학술평점은 별표1과 별표2에 따르고, 입학년도별 학술평점 취득기준은 제15조에 따른다.

③ 취득평점 총점이 제15조의 기준에 미달될 경우 학위프로젝트 본심사를 받을 수 없다.

④ 2009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입학생까지는 제1항의 필수 학술평점 취득 시, 반드시 학진등재(후보)지에 게재된 1편 이상의 논문 점수 혹은 전문연구서 1편의 저술 점수를 포함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2016년 9월 입학생부터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⑤ 2018년 9월 입학생부터는 제1항의 필수 학술평점 취득 시, 반드시 학진등재(후보)지에 게재된 1편 이상의 논문 점수 혹은 전문연구서 1편의 저술 점수를 포함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구분	업적내용	평점	비고
논문	국내 1등급	150점	※ 2016년 3월 입학생까지, 2018년 9월 입학생은 제시된 논문평점 부여 2016년 9월 입학생부터 2018년 3월 입학생까지 제시된 논문평점에 두 배 점수 부여 예> 2016년 3월 입학생이 국내 1등급 논문을 작성하였을 경우 : 150점 2016년 9월 입학생이 국내 1등급 논문을 작성하였을 경우 : 300점 2018년 9월 입학생부터는 제시된 논문평점 부여 ※ 나머지 저술 및 작품 등은 최소와 동일함.
	국내 2등급	100점	
	국내 3등급	80점	
	국내 4등급	30점	
	국제 1등급	400점	
	국제 2등급	210점	
	국제 3등급	100점	
저술	국제 4등급	30점	※ 교무처 기준표를 단순화하고 '교과서' 항목 제외했음 ※ 저술 종류의 최종판정은 전공주임교수와 부원장이 담당함. ※ '기타저작물'의 경우 저술 성격상 70점 이하를 부여할 수 있음
	전문연구서	150점	
	교양학술서	100점	
	학술번역서	100점	
	기타 저작물	70점	
학술발표	학회논문/포스터 발표 (국제/국내)		20/10

<별표 2> 작품발표

구분	업적내용	평점	비고
전시	공인 예술사회단체 공모/시상, 당선/수상작	200	
	사설 예술사회단체 공모 수상권입상	160	
	저명 갤러리 초대 개인전 기타 공인된 기관에서 주최하는 초대 전시	200 150	
공연 및 퍼포먼스	공연예술(영상퍼포먼스/연극/무용/퍼포먼스/뮤지컬 등) 연출 대극장(800석 이상)/중극장(400석 초과 800석 미만)/소극장(400석 미만)	200/150/100	
	기획,극/각본, 영상, 안무 (위 항목의 분류기준에 따른 기준 점수의 50% 적용함)	100/75/50	
	미술, 의상, 조명 (위 항목의 분류기준에 따른 기준 점수의 30% 적용함)	60/45/33	
영상예술	영화연출 (국내/외 초청 상영/전시)	150	
	디지털 영상 매체작품 (게임, 웹사이트, 모션 그래픽스, 기획 및 디자인, 애니메이션 장편/중편/단편 등)	150	
	방송프로그램 (공중파 및 지상파 방송) 드라마, 다큐멘터리, 시사교양 연출	200	
	방송프로그램 (공중파 및 지상파 방송) 드라마, 다큐멘터리, 시사교양 시나리오, 촬영, 편집, 기획	100	
기획	전시/공연 대규모행사 총괄기획, 예술총감독 (국내외 광역자치단체, 언론기관, 공공문화재단 규모)	200	
	전시/공연 대규모총괄기획, 예술총감독 (국내외 전문화랑 규모)	100	
기타	공연, 전시, 상영 등의 형태는 갖추지 않았으나 전공과 관련된 창작활동	120/100/80	※ 작품의 성격에 따라 점수부여

- 3) 제13조(학술평점 산출방식) ① **평점 산출시, 모든 실적은 신작에 대해서만 점수를 인정한다.**
 ② **전시, 퍼포먼스 및 공연의 경우, 상기 점수는 기관 초청 전시나 기관 초청 공연을 기준으로 하며, 대관 전시나 대관 공연은 상기 점수의 50%를 반영한다. 상기 내용 중 게임, 웹사이트, 모션 그래픽스 작품의 경우, 총괄 기획은 100%, 작품 제작 및 디자인 작업의 경우 저자수 비율(논문 저자수 적용과 동일)을 반영한 후 본 평점의 70%를 산정한다.**
 ③ **창작물이 공동작업인 경우, 논문 발표에서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와 같은 역할로서 작품 창작의 역할이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자수가 2인인 경우는 점수 기준의 70%를 적용한다. 그 외 공동저자수가 3-4인 경우 기준 점수의 50%, 5인 이상의 경우 기준 점수의 30%를 산정한다.**

4) 제14조(평가확인서 제출) **박사학위 작품과 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학생은 관련자료와 함께 '학술 및 작품활동 평가확인서'를 작성하여 학위 프로젝트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행정팀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창작물의 경우 다음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시, 공연, 페스티벌 등에 주최 측에서 선정하여 초청된 경우, 개별초청장 등 인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증빙자료.
2. 전시 분야 증빙자료: 주최 기관과 장소, 참여자 이력, 작품 소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카탈로그 등의 자료

3. 전시 공연 총괄 기획 분야 증빙자료: 주최 기관, 전체 사업규모 및 내용, 참여자의 역할과 참여 범위, 프로젝트의 목적 및 사업 내용이 증빙될 수 있는 자료.
4. 창작 공연분야 증빙자료: 주최 기관 및 장소, 사업 내용, 관람객 수 등의 공연장 규모, 참여자의 역할과 참여 범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카탈로그 등 및 관련 참조할 수 있는 언론 및 보도자료.
5. 이상 증빙자료는 physical catalogue로 제출하거나 혹은 주최기관에서 공식 발행한 physical 자료집이 digital로 만들어졌을 경우, 이에 대한 digital copy 버전이나 web page 등의 자료를 출력한 이미지나 pdf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검토를 받아 제출

5) 제15조 (학술평점 적용기준) 졸업에 필요한 학술평점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00/2001년 입학자 50점
2. 2002년 입학자 75점
3. 2003/2004년 입학자 100점
4. 2005년 입학자 125점
- 5. 2006년-2016년 3월 입학자까지 150점**
- 6. 2016년 9월 입학자-2018년 3월 입학자 300점W**
- 7. 2018년 9월 입학자 150점**

6) 제22조(영상예술작품의 요건) 상기 프로젝트 중 기획 및 연출 등을 **단독 저자** 수행하고, 프로젝트의 목적이나 형식이 진행 중인 학위논문에 부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학위 프로젝트로 인정될 수 있다.

7) 제23조(학위논문의 내용) 학위논문은 **부록의 형태로** 영상예술작품 또는 문화예술프로젝트의 발상, 기획, 리서치, 제작 등 진행과정 전반에 대한 시각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8) 제24조(필수교과목)

② 2016년 9월 입학생부터는 필수교과목을 '영상문화론', '비주얼리터러시와 미디어예술', '영상예술학 박사세미나' 등 3과목으로 한다.

③ 2018년 9월 입학생부터는 영상예술학 전공의 필수교과목을 '영상예술학박사세미나', '영상예술과 미학', '사회 속의 예술' 등 3과목으로 한다. 이는 2018년 9월 현재 재학생에게도 소급적용 된다. 즉, '사회 속의 예술'은 기존 '영상문화론'에 대한 대체과목이 될 수 있으며, 기존 필수과목 중 동일 제목이 아닌 새로운 필수과목 수업을 수강할 경우 이를 필수과목 이수로 인정한다.

9) 제 35조(학위논문 프로포절) **2016년 9월 입학자부터 입학 후 6학기 이내에 학위논문 프로포절에 합격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예비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